KOSHA Guide C-46-2023

- (4) 번화가 등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거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여 운반하여 야 하다.
- (5) 화약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에 운반하지 말아야 한다.
- (6) 기타 운반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습기가 있는 상태로 운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약은 그 화약의 성질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분을 함유한 상태에서 운반하여야 한다.

4.3 화약류 관리

4.3.1 화약류저장소

- (1) 저장소의 경계울타리 내에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.
- (2) 저장소의 경계울타리 내에는 폭발 또는 발화하거나 연소하기 쉬운 물건을 적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3) 저장소 내에서는 당해 저장소 내에서만 사용하는 안전화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4) 저장소 내에 들어갈 때는 철물류 또는 철물로 만들어진 기구는 휴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5) 저장소 내에서는 물건을 포장하거나, 상자의 뚜껑을 여는 등의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6) 저장소의 내부는 환기에 유의하고 동·하절기의 계절적 영향과 온도의 변화를 최소화하거나 또는 다이너마이트를 저장할 때에는 최고 최저온도계를 비치하여 야 한다.
- (7) 저장소에서 화약류를 출고하고자 할 때에는 저장기간이 오래된 것부터 먼저 출고하여야 한다.
- (8) 저장소에 제조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화약류가 남아있을 때에는 이상유무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.